

인 천 지 방 법 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4타경575611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5. 11. 14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오재홍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4.11.22. 강제경매개시결정			배당요구종기	2025. 2. 18.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과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박윤아	전부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주거 임차권자		130,000,000		2021.10.28.	2021.10.05.		
주택도시 보증공사 (임차인: 박윤아)	전부	권리신고	주거 임차인	2021.10.24.~ 2023.10.23.	130,000,000		2021.10.28.	2021.10.05.	2025.1.31.	
<p><비고></p> <p>박윤아: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3.10.10.임</p> <p>주택도시보증공사(임차인:박윤아):주택임차권의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대차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됨</p> <p>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</p> <p>을구 순위8번 주택임차권등기(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)</p> <p>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</p>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4타경575611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316-7, 316-8
[도로명주소]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1083번길 6-6

적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

대주택

1층 83.88㎡

2층 140.85㎡

3층 140.85㎡

4층 140.85㎡

지하 56.97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4층403호

적벽돌조

41.22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316-7
대 292.7㎡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. 292.7분의 23.80

감정평가액

134,000,000

회차

기 일

최저매각가격

매수신청보증금

1회	2025.12.23	134,000,000	13,400,000
2회	2026.02.05	93,800,000	9,380,000
3회	2026.03.20	65,660,000	6,566,000
4회	2026.04.21	45,962,000	4,596,200